

▣ 오피스텔 분양대금 납부일정

구분	계약금	중도금 60%						잔금
분양대금	10%	10%	10%	10%	10%	10%	10%	30%
납부시기	계약시	2020.5.31	2020.10.31	2021.4.30	2021.7.31	2021.10.31	2022.1.31	입주시

※ 상기 대출비용 및 일정은 최종 선정되는 금융기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공통사항

1. 전용면적은 오피스텔 건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79호 ; 2017.05.23)에 따라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안목치수)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음.
2. 각 실당 계약면적에는 오피스텔의 공동이용시설 면적(ELEV홀, 계단실, 부대시설, 복도 등)과 판매시설의 공동이용시설 면적(주차관재실, 방재실 등) 및 지하주차장의 면적이 실별 전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하여 배분되어 있으며, 각 실별로 상기 면적에 대한 금액이 분양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3. 상기 분양금액은 호실별 분양금액을 표기한 것으로 층, 향, 조망, 면적, 구조 등에 따라 금액이 상이하므로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람.
4. 상기 분양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며,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취득세(구 등록세 포함) 등 소유권 이전비용은 미포함된 금액임.
5. 상기 호실당 대지지분은 대지면적을 해당 용도의 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
6. 상기 실별 계약면적과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대지지분 변동 시 정산이 가능함.
7. 계약금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 체결시에 약정된 금액을 납부 함.
8. 상기 공급금액에 계산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관련 제세금은 추후 부과되는 과세금액을 잔금 납부시 정산할 예정임.
9. 중도금 및 잔금 납입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10.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사전에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1. 잔금은 오피스텔의 소유권 보존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입주지정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준용하기로 함.
1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에 2인 이상에게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에 따라 계약 취소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추후 관계법령의 변경에 의한 전매에 대한 사항은 변경될 수 있음.)
13. 외국인인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인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시,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함.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인 국내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인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함.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후 토지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함.
14.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되는 부분(기계실, 소방의 피난 등에 필요한 전체 층의 복도부분, 엘리베이터홀, 계단실 등)은 전체공용으로 하며, 공용면적은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 배분됨.
15. 중도금은 공사 감리자의 공정확인서에 의하여 공정이 50%이상 확인된 때를 기준으로 그 전후에 각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 일자에는 예정일자이고, 공사감리자의 공정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16. 잔금은 입주지정일에 완납하여야 하며, 임시 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잔금 중 50%는 입주일에, 나머지 50%의 잔금은 사용승인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함.
17. 상기금액은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사업주체 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람.
18. 오피스텔은 공동주택(아파트)과 달리 부대복리시설(주민운동시설, 입주민회의실, 경비실 등)의 면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9. 오피스텔 계약자의 경우 오피스텔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 보행공간 등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 할 수 없음.
20. 오피스텔의 명칭은 입주시 본 광고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분양시 입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므로 추후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1. 조감도,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22. 관 주도의 계획에 의한 주변 개발 계획은 관련 인-허가청 주관사항으로 당사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23. 계약의 해제와 관련된 사항은 분양계약서를 따르며, 공급계약 체결시 해당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실 것을 요청함.
24. 2017년 1월 2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통합 제정·시행으로 최초 분양계약 등이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으로 확대되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청약 신청 자격 및 공급일정

1. 분양공고일(2019.10. 23)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 또는 법인에 한함.
2. 청약 신청은 "타입"에 따라 접수하고, 1인당 1건씩 청약접수 가능, 호실은 신청한 타입별로 무작위 추첨하여 결정되며, 당첨자에 대한 개별통보는 하지 않음(동일인이 2개실 이상을 중복 청약 신청한 경우 청약신청 모두를 무효 처리함)
3.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신청 가능함.
4. 청약신청은 '타입'에 따라 접수하고, 층,호수는 무작위 전산추첨에 의하여 결정됨.
5. 당첨자 확인은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착오 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고 개별통보를 하지 않음. 예비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미계약 호/실 발생 시 분양사업자가 임의로 분양함.
6. 신청자격 착오로 인해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계약체결이 불가하고 계약체결 이후에도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7. 계약시 청약 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며, 미당첨 청약 신청금은 환불기간에 반환됨.

▣ 청약 및 계약 일정

구 분	청약기간	장 소
청약 일시	2019. 10. 28 (월) 08:00 ~ 17:30 본/지점 방문접수 10:00 ~ 16:00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 www.apt2you.com KB국민은행 홈페이지 : www.kbstar.com *하나은행 지점 방문
당첨자 발표 일시	2019. 10. 31 (목) 16:00 이후	아파트투유 홈페이지 개시 (www.APT2you.com)
계약 일시	2019. 11. 1 (금) 10:00~16:00 까지	건본주택 :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고산동 49-29 1층

- ※ "청라 시티타워 삼성그린코아 더시티" 건본주택 :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고산동 49-29 1층
- ※ 청약접수 과다시 당첨자 발표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 ※ 청약 시 제출하신 환불계좌 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일 경우 당사가 책임지지 않음.

▣ 인터넷 신청 안내

구 분	구 비 서 류
이용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은행 인터넷뱅킹 가입(공인인증서 보유)하신 분으로 거래은행 출금계좌에 청약신청금 이상의 출금 가능한 잔액을 유지하고 있어야 함.
이용방법 및 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투유 홈페이지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접속 : 아파트투유 홈페이지(www.APT2you.com) 접속 → 청약하기 '도시형/오피스텔' → 청약신청 → 공인인증서 로그인 ② 청약 : 주택명 및 모델번호 선택 → 주소지, 연락처 입력 → 출금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입력 →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 청약접수 완료 → 신청내역 조회 ※ 모바일(APT2you앱)으로도 가능 •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 접속 → 주택청약 → 인터넷 청약 → 청약신청 → 기타부동산

▣ 청약신청금 및 납부계좌

구 분	청약신청금	납부방법
오피스텔(전 타입 공통)	<u>1,000만원</u>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KB국민은행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납부 -하나은행 지점 청약접수 창구에서 직접 납부

- ※ 청약신청금으로 현금만 받지 않으며 명시된 청약신청금 계좌번호로 입금한 내역에 한해서 청약신청 할 수 있음.
- ※ 무통장입금시 청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 ※ 청약신청자와 청약신청금 납부인은 동일인이어야 하며, 계좌오류 및 환불불가 계좌 제출로 환불이 안 될 경우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음.

▣ 청약신청금 환불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2019.10. 31) 익영업일. 단,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함.

※환불방법 :

- 인터넷 청약자 :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에 청약신청금 출금계좌로 자동 환불.
- 하나은행 창구 청약자 : 자동환불 신청자(청약 시 접수은행에 개설된 청약자 본인명의 계좌로 자동환불 신청한 자)는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에

자동환불 됨.

※낙첨자 및 당첨자(미계약자 포함)는 일괄 환불되며, 환불계좌 명과의 청약자의 명의가 동일해야 환불이 가능함.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 시 기간이자는 지급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청약신청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본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	1. 청약신청서(하나은행 창구에 비치) 2. 본인 도장 또는 서명 (배우자의 경우 청약자의 도장) 3. 본인확인서류 :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또는 운전면허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배우자 대리 신청시 배우자 입증 서류 추가 제출(동일세대 구성시 : 주민등록등본 1부, 분리세대 구성시 : 가족관계 증명원1부) 4. 청약신청금 납입영수증 (지정계좌 무통장입금증) 5. 청약신청금 환불받을 통장사본 1부(청약신청인 본인 명의에 한함)
법인 신청시	1. 청약신청서(하나은행 창구에 비치) 2. 사업자 등록증 사본1부 3. 법인 대표이사 본인 신청 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직원 및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도장, 신분증 지참) 4. 법인 인감 및 인감증명서 1부(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1부) 5. 청약신청금 납입영수증 (지정계좌 무통장입금증) 6. 청약신청금 환불받을 통장 사본 1부(청약신청 법인 명의)
제3자 대리 신청시 추가서류	※ 본인 또는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함.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청약자의 인감도장(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에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오피스텔 청약신청 위임용)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접수 장소에 비치) - 대리 신청자의 도장,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청약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오피스텔 계약용)하여 제출하기 바람.

※ 청약장소에서는 청약금을 수납하지 않음

※ 당첨자로 선정된 후 정해진 계약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사업주체에서 임의 분양함.

※ 신청자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 **추첨방법**

1. 추첨일시 및 당첨자 발표 : 2019. 10. 31 (목) 16:00부터 금융결제원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에서 발표
2. 추첨장소 : 주택청약 사이트(www.apt2you.com) 에서 전산추첨 방식으로 동·호실을 무작위로 공개 추첨하여 당첨자를 선정함.
3. 당첨자 확인은 주택청약 사이트(www.apt2you.com) 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고, 착오방지를 위하여 전화로는 확인이 불가하며, 개별통보는 하지 않음.
4. 예비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미계약 호실 발생 시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선착순 수의계약으로 공급함.

▷ **청약 신청시 유의사항**

1. 신청자의 착오 접수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음.
2.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할 수 없음.
3. 예비 당첨자는 별도로 선정하지 않으며, 미계약 세대 발생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관련 규정에 따라 공급함.
4. 본 건축물의 층수, 향, 배치구조 등에 따라 입주 후 소음, 진동, 사생활권, 일조권, 조망권 등에 침해가 발생 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함.
5. 신청자는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주변 유태시설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람, 미확인 및 오인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사업주체에 없음.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구분	계약기간	계약장소
청약당첨자 계약	2019. 11. 1 (금) 10:00~16:00	“청라 시티타워 삼정그린코아 더시티” 건본주택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고산동 49-29 1층)

1. 계약금 납부 : 아래의 분양대금 납부계좌에 무통장 입금(호실 및 계약자 성명 기재), 아래 분양 대금 납부계좌 외 다른 계좌입금 또는 건본주택에서 직원 등에게 현금 납부하는 경우 분양대금 납입으로 인정되지 않음.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내용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오피스텔	계약금, 중도금, 잔금	하나은행	256-910056-15304	(주)한국토지신탁

1.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약정일에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하지 않음.(잔금은 입주지정일에 완납하여야 하며, 임시 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잔금 중 50%는 입주일에, 나머지 50%의 잔금은 사용승인일 이후에 납부해야 함.)
2. 상기 분양대금 계좌로 무통장입금 방법으로 입금하며, 무통장 입금시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함.
(예. 호실 707호 홍길동의 경우 => “707홍길동”으로 기재)
3. 상기 분양대금 계좌로 당첨된 호실을 확인 후 무통장 입금하여야 유효하며,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는 인정하지 않고, 무효로 처리하며, 분양대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 기준으로 함.
4. 분양대금 관리자 및 분양사업자는 신탁사인 (주)한국토지신탁임.
5. 지정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함.
6.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시 구비사항

구분	구비 서류
본인 계약 시	- 청약신청 접수(영수)증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오피스텔 계약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통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1통(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통),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 1통(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통)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또는 증빙서류
법인 계약 시	- 청약신청 접수(영수)증 - 법인 인감도장(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1통) - 법인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오피스텔 계약용) - 법인 등기부등본 1통 - 사업자등록증 - 대표이사 본인 계약 시 주민등록증 (직원 및 대리인 계약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제3자 대리 신청 시 추가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본인 계약 체결시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 추가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오피스텔 계약 위임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도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계약일 기준 1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됨으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오피스텔 계약용) 제출하시기 바람.(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시 외국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은 청약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동일인의 계약이 여러 건인 경우 구비서류는 계약하고자 하는 건수에 맞추어 각각 준비하여야 함.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1. 당첨자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포기로 간주하고 별도의 통보 없이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2항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에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함.
2.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됨.
3.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주민등록증 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으로 당첨 및 계약 체결되었을 경우 당첨 및 계약 취소, 고발조치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청약자에게 귀속됨.
4. 신청자의 착오 접수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 당사는 책임지지 않음.
5. 청약 신청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급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6.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인근 시설물의 변경과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등의 배치, 구조 및 층호실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건본주택에서 확인하고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7.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건본주택에서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8. 최초 계약일 이후 미분양 호실에 대한 호수 및 면적, 분양금액은 관계법령에 의거하며, 사업주체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9.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 출입구, 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 등은 건축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포함)도서의 내용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0. 본 건축물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1. 오피스텔의 입주시기와 근린생활시설의 입주시기는 다를 수 있음.
12. 근린생활시설 입점 업체는 미확정이며, 오픈시기 및 입점업체와 관련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3. 본 오피스텔의 분양권 전매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 3등 관련 법령에 의함.
14. 잔금은 건축법 제22조 제3항에 의거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잔금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입주일에, 나머지 5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승인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함.
15. 기타 관리비에 관한 사항은 별도 제정하는 관리규약의 기준에 따르기로 함.
16. 기타 계약조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기로 함.

▷ 중도금 대출안내

1. 대출기관 : 추후 별도 공지 예정
2. 대출금액 : 오피스텔 총 분양대금의 60% 범위 내 무이자 대출(중도금 1회차~중도금 6회차)
3.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사업주체가 별도 공지 및 안내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알선하는 금융기관을 통해 용자 가능하나, 정부의 대출관련 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이에 따른 대출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발생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가 부담하지 않음.(법인의 경우,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며 이 경우 중도금을 자납 하여야 함)
4. 중복계약자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대출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사항(대출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6.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른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고,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기일 내에 중도금(잔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와 관련 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등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7. 사업주체와 무관한 계약자의 대출 미신청, 대출결격사유(신용불량, 대출한도초과, 대출제한, "개인","사업자","법인"등 자격기준에 따른 대출거절 등)또는 정부정책 및 대출금융기관의 사정 등 제반 사정으로 대출이 미실행(부족실행 포함)될 경우 계약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사업주체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8. 사업주체가 알선하는 중도금대출은행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경우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대납하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로부터의 대출이자는 계약자 본인이 납부하여야 함.
9. 계약조건변경 등으로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가 있고, 사업주체 및 시공사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10. 1인당 신청 호실수는 제한이 없으나, 중도금 대출은 1인당 호실수가 제한될 수 있음.
11.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10% 완납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며, 계약금 10% 미납시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므로 이점 유의하기 바람.

▷ 착공, 준공 및 입주예정일 : 정확한 준공예정일자 및 입주일자는 추후 개별 통보함

1. 착공일 : 2019년 7월 / 준공예정일 : 2022년 6월 말 예정 / 입주예정일 : 2022년 7월 말 예정
2. 준공 및 입주예정일은 사업일정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오피스텔의 입주시기와 타시설(근린생활시설)의 입점시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3.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발견,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사업주체의 귀책사유없이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4. 실 입주일이 입주 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은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입주자 사전방문

- 사용승인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함.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비를 부과함.

▷ 공통 유의사항

1. 분양면적 표시방법을 중전의 평형 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람.
(평형 환산법 = 형별면적(m²) × 0.3025 또는 형별면적(m²) ÷ 3.3058)
2. 면적은 소수점 3째 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 계산상 소수점 4째 자리에서 반올림방식 차이로 인해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본 사업지 입주민에 대한 학교(초·중·고교) 수용계획은 현재까지 결정되지 않았음. 또한, 학교배치 및 신설학교 설립계획은 교육부 심사 및 학생배치계획, 교육여건의 변화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 관할 교육지원청에 문의하여야함.
4. 카탈로그, 기타 홍보용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조감도, 투시도, 배치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5. 각종 광고 및 홍보물(모형(이형타입포함), 리플렛, 전단, 공급안내, 홈페이지, 신문광고 등) 등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공공청사, 학교, 차도, 하천, 광장, 공원, 녹지 등)의 조성계획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서 시행주체 및 국가정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6.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에 표시된 위치도, 조감도, 투시도, 배치도,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등은 각 홍보물에 제작시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제작시점의 건축인허가 도서를 기준으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이미지 컷으로 건축허가(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포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CG 및 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실제 시공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8. 사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전체적인 단지 및 주변여건(현오시설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장 여건 미확인 및 주변 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9. 단지와 인접한 공원(수변공원 등)의 세부 개발계획 및 계획의 변경, 공원 출입 위치의 변경 또는 삭제 등은 당사와 무관하며, 각종 광고 홍보 유인물상의 이미지와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10. 본 단지의 명칭, 동표시, 외부 색채와 외관, 옥탑디자인, B·I(Brand Identity) 설치위치, 외부조명 시설, 문주, 담장, 방음벽,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동 출입구 및 캐노피, 필로티, 평면면계획, 외부 난간 형태/높이 및 단지 조경 및 기타 주택법, 건축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설계 변경 등은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심의, 협의(자문) 과정에서 향후 변경될 수 있음.
11.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현장 방문 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
12. 현장 설명은 따로 하지 않으며, 본 건축물은 실수요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으로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음.
13. 계약체결시 평면도 및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그 책임이 있음.
14. 사업주체는 상가전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앵커업종의 홍보를 위한 옥외 통합간판 또는 사인물을 설치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해 동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15. 호실별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호별 정산하기로 함. (단, 이 경우 정산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적용하지 않으며,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함.)
16.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일발과세자)을 제출(20일 이내)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또한 이를 지연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 등에 대해 분양사업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또한 대금납부 이후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기 발급된 세금계산서(개인)를 대금납부 이후 사업자로의 변경 발행은 불가함.
17. 본 건축물은 상업지역의 특성상 동, 층수, 향 등에 따라 입주 후 소음, 진동, 사생활권, 일조권, 조망권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반드시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하며, 주변의 개발(공동주택, 상업시설 등)에 의해 일조 및 조망 등에 침해가 될 수 있음.
18. 본 사업부지 내 건립되는 공유시설물(보행공간, 주차장 등)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함.
19.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건축허가 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0. 공용부에 설치된 승강용 엘리베이터 및 비상용승강기는 화재시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
21. 각 실의 엘리베이터홀과 현관문 사이 공간은 공용면적으로 입주자 임의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
22. 지하 주차장 출입구, 보행공간 등의 조경부위, 지하주차장, 근린생활시설, PIT층, 옥상정원, 옥탑 및 상층부에 환기용 배기구가 설치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진동, 소음,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사용자들에 의한 바닥충격음, 외부소음 등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23. 단지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이 노출될 수 있으며, 단지 배치상 기계실, 전기실, 주차장, D.A(급배기타워) 및 쓰레기 분리수거함, 재활용 창고 등의 위치에 따라 저층부 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수 있으며, 이에 상세한 위치 등은 건축허가 도서 등의 홍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람.
24.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25. 단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성과도서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선형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음.
26. 지하 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및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
27.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지하1층~지하7층 총7개층으로 지하2층~지하7층은 오피스텔전용이고, 지하1층은 상가와 오피스텔이 공동으로 사용함.(상가전용 주차구역 표시 예정)
28. 대지 확정측량 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승인 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단지배치, 단지 내 도로 선형, 조경(수목, 시설물, 포장 등),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공급면적 등이 계약체결 이후 입주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9. 홍보물의 배치도 상에 표현되지 않은 D.A, 발전기실 연도 등은 건물에 매립되어 소음 및 매연등이 발생할 수 있음.
30. 근린생활시설, 관리사무소, 조경시설, 주민공동시설, 엘리베이터, 실외기실, 환기구(환기시설), 간판/경관조명 등에 따라 소음 및 진동, 불빛, 수증기, 시각적 간섭 등으로 조망권, 환경권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1. 단지 배치도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관련 법규 변경, 현장 시공 여건 및 상품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2. 실제 시공 시 대지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계획 주차대수에는 확장형주차, 경형주차, 장애자용 등이 포함되어 있음.
33. 대지면적(지분)에는 공공이 이용할 수 있는 차도, 인도, 조경, 보행공간, 근린생활시설의 주차공간 등이 포함되어 있음.
34. 조경 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계획, 세부식재(위치, 수량, 종류 등)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보행공간 및 도시계획시설, 기반시설 등의 기부채납 또는 무상양도 등에 따라 재산세의 부과 기준 증감 및 준공 후 유지보수 비용의 공동관리비 부담 증감 등이 발생될 수 있음.
35. 단지주변 보행공간 등은 공공에 개방되는 시설로 입주자 임의로 휨스를 설치하거나 재산권 등을 행할 수 없으며, 보행공간 유지 및 관리에 발생하는 비용은 입주자 부담임.
36.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시설의 구성 및 건축 이용 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시설 내 기본집기는 설치되지 않음.
37. 외부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및 통풍(환풍)량 검토에 따라 세대(실)별, 층수별, 창호사양(모델, 창틀, 재질,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 될 수 있음.
38. 층별 또는 호(실)별로 일조, 통풍, 소음, 조망, 콘크리트 난간턱 높이, 난간대의 위치와 형태 및 재질, 기둥 또는 보 등의 차이가 있으며, 인-허가 과정 및 협의에 따라 실제 시공 시 변경 될 수 있음. 또한 외관 구성상 일부 호(실)의 창호가 확대, 축소, 개폐방식 및 방향 등의 변경이 될 수 있음.
39. 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부지 내 지역 및 단지 내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최종 협의 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음.
40. 본 건축물에 부력방지를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될 경우 공용전기세가 발생될 수 있음.
41.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고, 세대 천정내부에는 상부세대 배관 등이 설치되어 소음 및 누수 등이 발생될 수 있음.
42.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D.A)이 지상으로 노출되어 있음.
43.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세대 내,외 및 공용부분 시설물 등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44. 단지 내 차량 진·출입을 위한 단지 출입구는 준공 후 도로법에 의거 점용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점용료는 입주자(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함.
45. 자전거 보관소 및 관련시설은 근린생활시설 및 불특정 다수가 사용할 수 있는 곳으로 입주자가 임의로 훼손 또는 제거, 점유할 수 없음.
46. 주차장의 기둥 및 벽, 시설물 등의 간섭으로 차량 도어 개폐시 불편할 수 있음.
47. 당첨 및 계약체결 이후 주소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사업주체에 서면(주민등록등본, 연락처) 통보하여 함.
48. 지상1층에 설치된 보행공간 및 조경시설은 법적으로 필요한 시설로서 추가 변경을 요청 할 수 없음.
49. 부지내부에 지하주차장 진·출입램프가 설치되어 차량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과 야간조명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음.
50. 부지주변의 도로공사 또는 행정적 원인으로 인하여 도로의 경사도, 대지의 레벨, 조경, 조성레벨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51. 해당 부지는 향후 지하철 시공·개통 및 운행에 따른 진동, 소음, 기타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52. 내부의 차선 및 보도, 주차장 등은 관련법규에 따른 허가 사항으로 변경될 수 없으며, 재활용수거장, 소화전 및 D.A에 의한 소음, 풍압, 악취 등에 의하여 불쾌할 수 있으나 반드시 필요한 설비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53. 오피스텔 외부창호는 관련 법규에 의해 세대내 환기창, 복도 배연창이 설치되며, 배연창 구동기, 환기창의 색채와 규격은 변경될수 있음.
54. 외관개선을 위하여 건물외관(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측벽, 창틀모양 및 색, 색채), 난간의 모양, 자재 등의 디테일, 경비실, 부대복리시설 등이 변경될 수 있음.

55. 부지 내 조경 및 조경수 식재위치 등 세부 조경계획은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이상으로 시공됨), 관계기관 심의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라 조경 시설물에 따른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 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56. 부지 내 조경,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57. 단지 내 무인택배 및 우편수취함은 1층 오피스텔 주출입구 옆에 설치될 예정이며, 위치 및 형태는 변경될 수 있음.
58.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분양시 제시한 기능으로 적용되며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 배치, 마감, 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음.
59. 본 건축물은 지역난방을 이용함.
60. 본 계약물건의 계약체결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배치 및 변경에 따라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조망권/환경권/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61. 공용시설인, 휴게공간, 부대복리 시설, D.A, 근린생활시설, 등의 설치로 일조권/조망권/환경권/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음.
62. 실제 시공시 대지면적, 연면적, 조경면적, 용적률, 주차대수 및 위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음.
63. 지하주차장 출입구 및 근린생활시설의 지붕에 인접한 저층 세대는 인접지환경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64.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하며, 단지의 도로가 있더라도 단지 배치의 특성상 일부세대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불가할 수 있음.
65. 지하주차장 및 기타 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부분 등의 면적은 변경 사용될 수 없음.
66.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 차량진출입차단기 지하주차장은 교통 통제의 필요성, 효율성, 측량결과 등에 의거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설계변경 필요 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67.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별도 산정되어 있으나, 단지 내 오피스텔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있지 않음.
68.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은 심의 및 관련 절차에 따라 결정되어지므로 위치 및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고, 계획변경에 따라 문화예술진흥 기금에 출연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69. 주동 옥상정원, 옥상 및 옥탑지붕에 각종 설비(무동력팬, 공청안테나 등)가 본 공사시 설치됨.
70. 대지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의 동의 없이 변경가능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71. 사용승인 이후 부지 내 보행공간 및 조경 시설물 등 부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부지 홍보용 싸인물 등)은 모든 입주자가 공동 부담하여야 함.
72.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선수금이 부과됨.
73. 당해 사업에 사용된 시공사의 로고 및 상품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74. 복도 및 전용면적 천정내부는 기계설비 및 전기설비 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음.
75. 소방관련 법규에 따라 3~10층 복도에 완강기가 설치됨.
76. 엘리베이터와 기계실, MDF실 등이 접하거나 또는 인접한 실은 엘리베이터의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 될 수 있음.
77. 본 건축물의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용도는 "일반업무시설"로 분류되며, 오피스텔 건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79호 ; 2017.05.23)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승인 후 불법 구조변경 등 행위에 대해서는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행정조치 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람.
78. 오피스텔 입주자와 근린생활시설 입점자가 일부 주차통로 및 일부 복도, 관리실, 인접 통로등을 공동 사용하며, 향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79. 주차장 진입구 도로영구점용 부과대상 점용면적은 변경될수 있음.
80. 세대내 천정 속 강제환기시스템이 설치되므로 작동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 할 수 있음
81. 엘리베이터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82.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건축법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의함.
83. 준공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점포 내외 및 공용 부분 시설물 등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없음.
84.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85. 입주시 관리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선수금 및 공사예치금 등이 부가됨.
86. 각 호/실별로 입주하고자 하는 용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시설별 해당용도에 부합되지 않은 용도가 입주할 경우 용도변경은 입주자의 부담임.
87. 취득세는 납부원이 발생한날(통상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관할 시.군 세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람.
88.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허가도서에 준하며, 사업 시행자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89. 당사가 기본 제공하는 전기, 설비용량 외 추가 증설요구 등은 불가하며, 업종에 따라 계약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증설해야 함 .

■ 오피스텔

1. 오피스텔 입주자와 근린생활시설 입점자가 일부 주차도로 및 일부 복도, 관리시설을 공동 사용하며, 향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건축법 및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입주 후 불법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 바람.
4. 오피스텔의 현장여건 및 구조 / 성능 /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될 수 있음.
5. 조감도,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6. 스프링쿨러 및 환기구(급/배기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견본주택 가시설물로서 본 공사 시 설계도면 기준에 의해 시공되며,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본 공사시 상기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천정,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가구 등이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7. 단지모형, 조감도 등에 표현된 단지 외부 횡단보도, 보도, 점자블럭 등의 사항은 본 시공시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8. 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건물의 외부 입면디자인과 마감재, 기타 설계변경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9. 오피스텔 주동 외부마감 및 저층부 석재마감은 동별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 양지 바람.
10. 주동 옥탑 창호의 위치 및 크기는 본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11. 현장여건 및 단열성능 개선을 위한 일부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
12. 침실, 욕실 등의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의 폭(벽체 두께면)이 변경될 수 있음.
13.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샤시 및 유리창 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람.
14. 세대 내 유리의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하여 위치별로 특성이 다른 유리가 설치될 수 있음.
15. 본 공사 시 각종 창호류의 사양(유리사양, 창틀 디자인, 창호크기, 루버형태, 재질, 색상, 제조사 등)은 변경될 수 있음.
16. 주방 벽, 욕실 벽, 바닥 및 발코니 바닥의 타일 나누기는 본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시공될 수 있음.
17. 세대 및 공용부의 전기분전반, 통신 단자함, 조명 , 콘센트, 통신수구 및 스위치의 위치는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18. 안내된 세대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 (규격)의 가전제품 (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 할 수 있음.
19. 주동 옥상정원, 옥상 및 옥탑지붕에 각종설비(무동력팬, 안테나 등)가 설치될수 있음.
20. 근린생활시설 3층 실외기실로 인하여 일부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있을수 있음.
21. 본 오피스텔은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난방은 지역난방열원을 이용하며, 천정형 펜코일유니트시스템(냉방전용)이 설치되어 운영관련사항은 자체건물 운영방침에 의거하여 관리하여야 함.
22. 천정형 펜코일유니트시스템의 수량 및 위치 등 변경은 요구할 수 없으며, 계약자 개별 에어컨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이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지역 냉,난방 의무사용대상 건물에 해당)
23. 쓰레기 분리수거장과 인접한 동 및 세대에서는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보일 수 있고, 소음 및 진동, 냄새, 해충, 미관저하, 수거차량 상시 접근 등에 의한 사생활 침해의 여지가 있으니 계약전에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24. 근린생활시설 상가가 위치하고 있어 상가 이용객에 의한 생활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상가의 상부에 위치한 세대는 간판 설치에 따른 조망, 일조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25.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바닥재(타일, 마루 등), 벽지류, 가구, 가전기기류, 배선기기, 설비류 및 각종제품 등)은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제조사의 사정으로 공급이 불가능할 경우 동급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26. 견본주택 미건립 세대의 마감사양 및 색상, 패턴, 가구디자인, 제공 품목은 건립세대와 동일하게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에 세대 디자인에 사용된 천연석 및 타일 등의 표면에 스크래치, 틈 같이 보이는 티끌, 알갱이 등은 자재 자체의 특성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기 위한 디자인 컨셉으로 자재의 하자가 아님을 양지 바람.
27.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휴막이가시설, 지하층의 구조, 기초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음.
28. 세대 현관문이 엘리베이터 출입문과 마주하고 있는 경우 세대 간섭이 발생할 수 있음.
29. 세대내 제공되는 홈네트워크(또는 홈오트메이션), IOT(Internet of Things - 집안 사물들을 인터넷에 연결하여 원격으로 설정/조회/제어가 가능한 시스템)의 기능이 본공사시 변경될 수 있음.
30. 일부 주차공간의 경우 인접 구조물로 인해 승하차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31. 건축허가도면의 안목치수는 타일,가구 등 마감재 설치 두께가 미반영된 수치로 입주시 실제 측정 치수와 상이할 수 있음.
32. 다락은 거실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바닥난방이 미설치되고 다락 천장 높이에 따른 불편이 있을 수 있음.

■ 건축물의 내진설계에 관한 사항

청라 시티타워 삼정그린코아 더시티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며, 내진 능력은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표기하며, MMI 7(진도7) 진도등급 VII-0.204g임.

▷ 기본주택 유의사항

1. 기본주택의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기타 홍보물, 기타 홍보물상 CG, 조감도 또는 사진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당사에서 연출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기본주택의 단위세대 및 공용시설 등에 적용되는 모든 자재 및 제품은 시공시기, 생산여건에 따라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의 타사자재 및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3. 기본주택에 설치된 이동식가구 및 페브릭, 가전, 악세서리 등 집기류는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으며, 기본주택 창호(프레임, 유리 등)는 기본주택설치를 위해 임의로 지정된 제조사에 의해 생산된 제품으로 본 공사시 제조사는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프레임 및 손잡이 등의 하드웨어는 다소 상이할 수 있음.
4. 기본주택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사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5. 기본주택에는 인테리어 소품가구, 기타 전사용품이 설치되어 있으며 청약 및 계약 전에 기본주택에서 전사용품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에 대해 민원(추가공사)을 제기할 수 없음.
6. 기본주택은 일부 유상옵션 품목을 포함하여 설치되었으며, 타입별 제공품목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확인바람.
7. 기본주택 건립 평형 외 시공되는 평형의 내부치수 및 마감재의 사양은 기본주택 건립평형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에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8. 기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홀 및 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 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9. 기본주택에 설치되는 화재감지기, 유도등, 비상방송용 스피커, 스프링클러의 위치 및 수량은 기본주택을 위한 소방설비로 본 공사와 무관하며 본 공사시 소방법에 맞추어 시공됨.
10. 기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철거함.(단,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보관)
11. 기본주택에 표시된 바닥배수구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12. 기본주택에 설치된 온도조절기 및 콘센트, 스위치, 조명기구, 환기디퓨저 등 각종 기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개소는 변경될 수 있음.
13. 기본주택에 건립된 세대는 미리타입이 존재하므로 계약 전 반드시 해당 세대를 확인 바람.
14. 기본주택에 설치된 전사용 조명기구는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음.
15. 기본주택에 설치된 현관문틀은 기본주택용으로 실제 현관문틀이 아님에 유의 바람.
16. 실제 시공 시 적용되는 마감재의 범위는 기본주택의 현관문을 경계로 실내부에 한함.
17. 기본주택 세대내부는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이 불가함.
18. 계약체결시 기본주택 내 비치된 설계도서 확인 후 계약체결하여야 함.

▷ 사업관계자 명칭

구분	분양사업자 (시행사)	위탁자	시공사	설계자	분양대행사	비고
상호	(주)한국토지신탁	(주)정우토건	삼정건설(주), (주)삼정	(주)아센스종합 건축사사무소	(주)엔터렘	
사업자 등록번호	120-81-63986	797-88-00572	607-86-02370 607-81-33067	387-86-00385	111-81-31160	

▷ 관리형 토지신탁계약

- 본 건축물은 위탁자 (주)정우토건, 수탁자(신탁회사) 겸 사업주체인 (주)한국토지신탁 간에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수탁자(신탁회사)인 (주)한국토지신탁이 사업주체가 되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착공신고 후 분양을 위한 별도의 신탁계약을 요하지 않습니다.
- 본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후 "(주)한국토지신탁"과 "(주)정우토건"간에 신탁계약이 종료(신탁목적의 달성, 신탁기간의 만료 등 신탁계약에서 정한 종료사유의 발생, 신탁계약의 해지 등을 의미함)되거나 또는 본 신탁대상 건축물의 소유권이 "(주)한국토지신탁"에서 "(주)정우토건"으로 이전된 경우(신탁의 일부 종료) 본 건축물에 대한 분양계약 관리와 "(주)한국토지신탁"의 "수분양자"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의무는 본 건축물에 대한 분양계약의 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주)정우토건"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됩니다.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고·표시사항

-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자 : 등록번호 서울 080010 (주)한국토지신탁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9(역삼동, 삼성제일빌딩)
- 견본주택 위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고산동 49-29 1층
- 분양문의 : 02-326-5550(5551)
- 홈페이지 : www.cheongna-greencore.com
- 소유권에 관한 사항 : 대지소유권 100% 확보
- 소유권 이전형태 : 잔금 완납시 개별등기
- 본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임 **(2019-청라관리과-신축-16)**
- 본 광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청라 시티타워 삼성그린코아 더시티” 분양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입주자 분양광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에 대하여는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며,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거래허가 등 법령상 거래규제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본 광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청라 시티타워 삼성그린코아 더시티” 견본주택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 위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고산동 49-29 1층

견본주택 연락처 : 02-326-5550(5551)